

제정 2022. 11. 10.

개정 2023. 12. 13.

ESG위원회 운영규정

2023. 12. 13.

(주)YG엔터테인먼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YG엔터테인먼트(이하 "회사"라 한다)의 정관 이사회 규정에 근거한 ESG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ESG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측면에서 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회사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제3조 (권한)

- ① 위원회는 회사가 환경적,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제12조에 열거된 사항을 의결한다.
- ② 위원회는 의결하거나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4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구 성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총 위원 중 사외이사의 수가 사내 이사의 수보다 적지 않도록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일 까지로 한다.
- ④ 위원이 사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 또는 사외이사의 구성 비율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에서 결원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

-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개최 시 의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당해 위원 선임을 위한 회의는 연장자인 위원이 주재한다.

제7조 (간사)

-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지원한다.

제3장 회 의

제8조 (위원회)

-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된다.
- ② 정기위원회는 반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변경할 수 있다.
-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 (위원회 소집)

- ①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만약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일 24시간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전자문서,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② 위원회 결의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이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관계인의 출석 등)

-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경영진,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등 관계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 관련 부서에 업무 진행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진술 청취, 현장 실사 등 필요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 (부의사항의 종류)

- ① 부의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이 결의사항, 보고사항, 논의사항으로 구분된다.

1. 결의사항: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승인, 수정승인, 보완 또는 부결로 결의한다.

- 가. ESG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관리
- 나. ESG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다. 환경, 사회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및 의사결정(단, 주요한 환경 이슈에 관하여는 연 1회이상 정기적으로 부의한다.)
- 라. ESG 관련 활동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과 평가 및 개선
- 마. ESG 관련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PR, 공시보고서의 심의 및 승인
- 바. 건별 5억원 이상의 사회공헌 집행. 단, 긴급 재난 구호와 관련된 부득이한 경우 대표이사가 선집행 후 사후보고 할 수 있음
- 사.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보고사항: 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결의에 갈음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써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위 1호 결의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 관련 위원 및 임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할 수 있다.

3. 논의사항: 차기 이후 회의에 부의될 사항으로 사전 논의가 필요한 사항 일 경우 부의하며,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 등에 의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결의하지 않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3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결의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전자서명 가능)한다.

제4장 기 타

제14조 (결의사항 통지)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직후 최초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기타)

- ① 본 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 ②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이사회 규정 또는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2022. 11.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13.>

본 규정은 2023.12.14.부터 시행한다.